

충청북도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7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// . / 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정 이유

- 충청북도홍덕사지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 으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

□ 주요 골자

- 홍덕사지가 고인쇄 박물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의 정비
(청주홍덕사지 → 고인쇄박물관)

□ 첨부

1. 충청북도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(안)
2. 신.구조문 대비표 1부
3. 관련법규 발췌 1부
4. 기타 참고자료 1부 끝.

충청북도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 청주홍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 중 "홍덕사지" 를 "고인쇄박물관"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중 "문화재보호법 제39조"를 "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"로 "홍덕사지" 를 "고인쇄 박물관"으로 한다.

제5조(관람료징수) 중 "홍덕사지사무소"를 "청주고인쇄박물관"으로 한다.

【 별지 제1호서식 】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